

國統75—1—69

比較經濟体制下에서의 國民厚生の
計量的 比較

1975. 11.



國 土 統 一 院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5年度 下半期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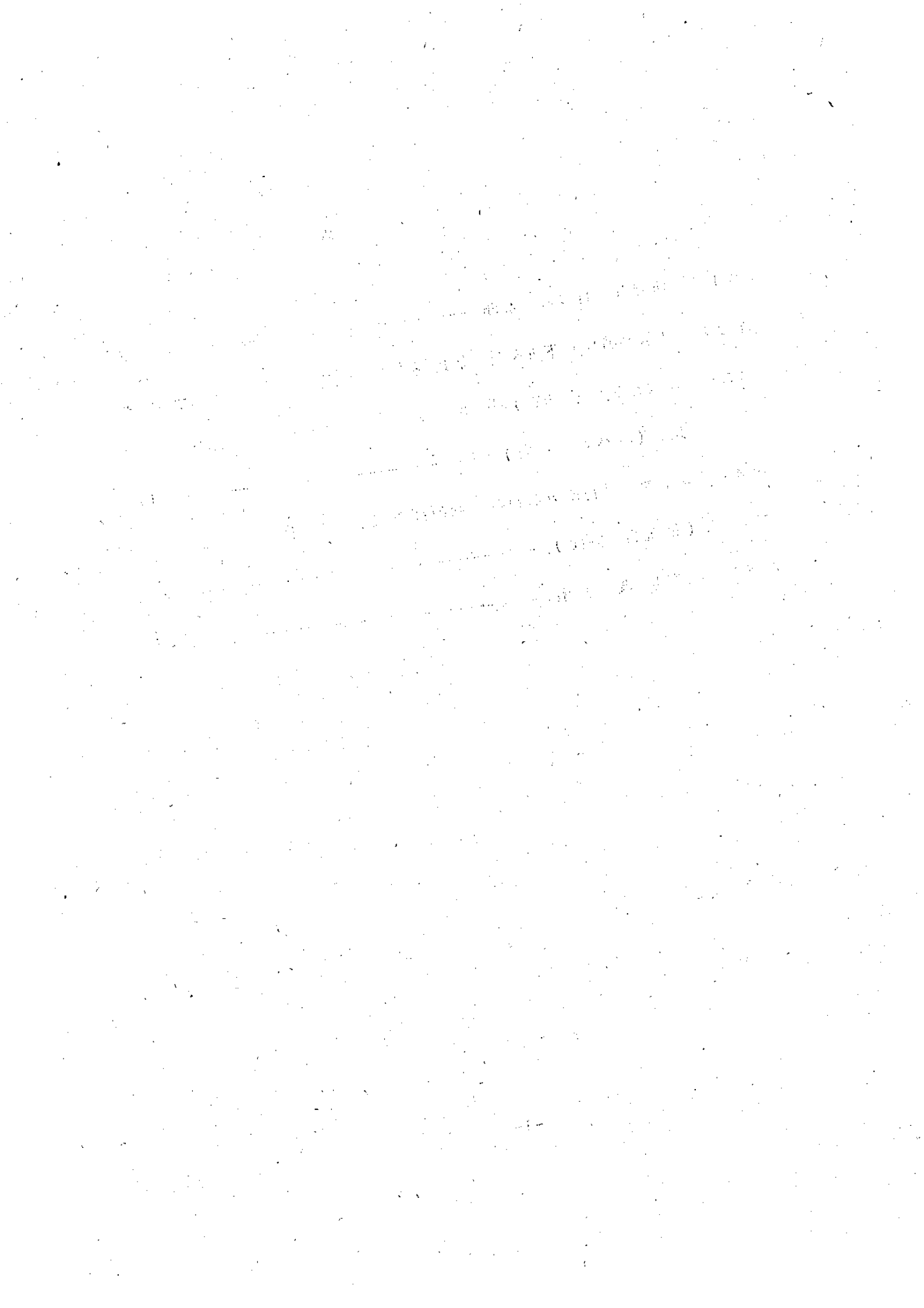
1975. 11.

西江大學校 經商大學 教授

李 承 潤

目 次

第 1 章	研究의 目的과 範圍	3
第 2 章	比較經濟體制下에서의 國民厚生の 概念設定	8
第 3 章	國民總生産 (GNP) 의 增加率과 厚生函數의 相關關係 比較 (巨視的 側面)	18
第 4 章	階層別 所得配分現況과 經濟部門別 交易條件의 比較 (微視的 側面)	36
第 5 章	問題點 및 展望	57



第 1 章 研究의 目的과 範圍

韓國의 民族史的인 正統性的인 계승문제를 研究하는데 있어서 經濟的인 側面에서의 南·北韓比較는 여러 側面에서 試圖되어야 하나 그中에 서도 主要한 事實의 하나는 韓國은 個人의 私有財産을 기반으로 한 自由民主主義 體制下에서 急激한 經濟成長을 이룩한 점을 들 수 있다.

經濟政策의 궁극적인 目標는 時代와 國家에 따라 相異하나 同時에 이같은 目標가 한時代에 있어서는 個個國家에 있어서 그 綱次를 점차로 없애거나 同一한 方向으로 接近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例컨대 古典學派의 D. Ricardo 라든가 新古典學派에 있어서 Alfred Marshall 이나 A.C. Pigou 等에 있어서 目標가 設定하는 초점을 볼것 같으면 物量面의 成長, 發展과 더불어 계층간에 均等한 所得配分으로 因하여 實質的인 國民厚生을 極大化하는 것으로서 Pigou에 依하면 「國民所得의 크기의 增加의 어떠한 原因도 一般的으로 經濟的 厚生을 增加시키며 特히 分配가 貧者에게 有利하게 變化하는 것은 社會一般의 厚生을 더욱 增進시키는 것¹⁾」을 지적하고 生産의 增大 및 分配의 均等이 總體的 福祉의 增進이 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註 1) Arthur Cecil Pigou, The Economics of Welfare, 1924, London, P.103.

1970年代에 들어와서 分断国關係의 特徵은 雙方의 關係正常化란 平和共存의 양상을 들수 있다.

이같은 現象은 冷戰体制의 쇠퇴와 強大國間의 政治秩序의 變化等을 들수 있는데 特히 獨逸의 경우 「무란트」의 東方政策의 결과 오늘날의 東·西獨은 基本條約의 체결과 함께 國聯의 同時加入과 多方面에서의 交流와 協力을 擴大하고 있는 事實을 들수 있다.

韓國에서는 1970年 8月 15日 朴大統領은 北韓의 武力赤化企圖의 拋棄가 平和統一의 先決條件임을 밝힌 平和統一指針을 内外에 宣言하였고 다음해인 1971年 8月에는 分断으로 因한 南·北韓離散家族의 苦痛을 人道的인 見地에서 해소시키기 위하여 南·北赤十字會談을 提議케 함으로서 南·北韓間의 對決關係를 對話의 關係로 轉換시키는 劃期的인 措置를 取하였다.

이어서 1972年 7月 4日에는 南·北韓關係를 보다 積極적으로 展開하고 南·北이 다같이 統一問題를 平和的으로 解決할 것을 全民族앞에 엄숙히 서약하는 「南·北共同聲明」을 유도 發表하는데 成功하였고, 1973年 6月 23日에는 政府가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을 發表하여 平和的 統一의 先行條件으로서 韓半島에 있어서의 平和定着을 구체화 할 수 있는 條件을 闡明하였으며, 1974年 1月 18日에는 南·北韓相互 不可侵協定締結을 提議함으로서 韓半島平和維持의 效果的 方案을 提示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分断國 雙方의 關係正常化의 試圖는 獨逸과 韓國의 경우에서 볼수 있듯이 相互不信의 해소와 平和共存의 方式을 前提로

하고 있기 때문에 平和共存關係에 따른 經濟發展과 經濟力の 差異, 生活水準과 國民厚生의 격차는 새로운 問題意識으로 登場하고 있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分断國 갈등의 해설을 圖式化한 Gregory Henderson의 段階說을 볼것 같으면, 1段階는 치열한 敵對關係와 武力에 依한 相對方의 統合, 2段階는 敵對感의 감소와 軍事的 對決의 深度가 低下되는 現象을 들고 있으며 3段階는 和解의 段階로서 冷戰과 갈등의 완화와 對內的 安定의 增大는 分断 國相互間의 協調에 對한 制約을, 감소시켜 주고 있는 것이 特徵으로 되어 있다.

以上과 같은 Henderson의 分断國의 葛藤解消와 統合의 段階說을 볼때, 오늘날 東·西兩獨은 이미 相互不信을 解消하고 있으나 南·北韓은 아직도 敵對感의 常存과 軍事的인 對決狀態가 持續되고 있음은 勿論 各己 分断以前의 正統性和 關聯하여 唯一合法政府임을 主張하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이같은 상황하에서 經濟的인 側面에서의 南·北關係, 總體的인 經濟力量과 發展速度, 生活水準의 比較, 계층간 所得配分의 양상등, 經濟發展競争은 表面化되고 있는데 現在의 南·北關係에서의 顯著한 差異點은 韓國은 오늘날 모든 人類가 推進하고 있는 共通的인 目標인 自由民主主義體制下에서 急激한 經濟發展을 이룩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韓國은 1962年 第1次 5個年經濟計劃의 착수 이래 1974年度까지의 韓國經濟는 年平均 成長率 9.4%, 1人當 GNP가

87弗에서 513弗로서 5.9배가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률을 이룩하였고 이에 따라 國民의 消費物量도 크게 增大하였는데 13年間 消費量이 가장 크게 增大한 것이 肥料部門으로서 '62年度의 年間 1人當 消費量이 20kg이던 것이 '74年度에는 12.5배인 250kg으로 增加하였으며 이에 따라 食糧作物의 10단보당 生産量은 '62年度의 197kg에서 '74年度에는 271kg로서 1.4배나 增加한 事實을 볼수 있다.

또한 衣類에 있어서도 人造섬유의 消費量이 3.8배나 增加한데 比하여 天然섬유消費量은 오히려 0.4%가 감소, 消費類型의 變化를 나타내고 있다.

反面에 北韓은 지난 '60年代에 추진한 7個年經濟計劃의 失敗와 現行 6個年經濟計劃의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制限된 資源을 주로 軍事力 強化를 위한 兵器産業과 重工業에 우선적으로 配分한 結果 住民消費生活面에 있어서는 내핍생활을 強要한으로서 오늘날 共產國 諸國에서도 가장 극렬한 閉鎖體制를 持續하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따라서 本研究報告書는 1975年 10月 国土統一院과의 學術用役契約의 일환으로서 比較經濟體制下에서의 南·北韓國民厚生の 計量的 比較를 試圖하기 위하여 착수 하였는데 第2章에서 比較經濟體制下에서의 國民厚生の 概念說定과 施策目標의 差異點을 밝혔으며, 第3章은 GNP成長에 對한 租稅負擔率의 相關關係를 分析한으로서 資本蓄積率과 個人消費性向과의 關係를 說明하였다.

第4章은 兩體制間 生産財貨의 分配面을 中心으로 하여 勞動生産

性의 向上과 實質所得의 增加推移를 分析의 對象으로 하였으며, 國家施策을 中心으로 한 經濟部門別 交易條件을 검토함으로써 生産 活動의 部門別 實態와 部門間 所得實態의 差異點을 對象으로 하였는데 例를 들어 北韓의 경우 農業과 工業部門間의 편중시책은 實質的인 所得配分 過程에 있어서 農業分野가 지나치게 희생되었다는 점등이 主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現在 北韓의 價格體系와 部門別 基本建設投資의 상세한 資料의 결핍은 本研究가 自然 巨視的인 側面에 局限된 點을 미리 밝혀 두는 바이다.

第2章 比較經濟體制 下에서

國民厚生の 概念設定

經濟政策의 目標은 時代와 國家에 따라 相異하다.

私有財産을 基盤으로 하는 資本主義經濟社會에 있어서나 또는 生産手段이 國家의 全面管理下에 있는 共產主義 統制經濟社會에 있어서나 國民經濟의 持續的 成長에 따른 富의 增大에 두고 있음은 共通的인 現象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事實上 經濟政策이 追求하는 目標와 이를 規定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學說이 있으나 E. Phillipovich는 經濟政策의 目標을 「福利의 增進」¹⁾에 두고 있으며 R. Wilbrand는 「欠乏의 防止」²⁾ R. Helander는 「國民所得 및 國民生産의 增大」에 두고 있으며 K. Marx는 「能力이 아닌 必要에 따른 分配」³⁾ 등에서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本章에서는 時代와 國家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 經濟政策이 追求하는 目標와 厚生에 對한 概念設定을 初期資本主義 社會에서의 古典經濟學派와 共產主義經濟體制下에서의 Marx의 理論을 比較分析하고 現代社會가 追求하고 있는 當面課題를 分析의 對象으로 하였다.

가. 國民厚生에 對한 古典學派의 理論

經濟政策의 目標은 時代와 國家에 따라 相異하게 되나 이러한

註 1) E. Phillipovich, Economic Policy, 1927.

2) R. Wilbrant, Der Volkswirtal P.5
Berater der Volkswirtschaft, 1928, P.350.

3) K. Marx, Das Kapital, 1935.

目標가 한時代에 있어서는 個個國家에 있어서 偏差를 檢査로 없애거나 同一한 方向으로 接近하게 된다. 왜냐하면 經濟行爲自体는 自由主義나 共產主義體制를 초월하여 어떠한 國家에 있어 서로 共通의 根本課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大部分의 國家에 있어서도 經濟政策의 目標가 國民福祉의 增進에 있다고 하는 것도 結局은 經濟學全体에 부여된 前述한 根本課題를 어떻게 解決하여 國民의 生活를 物質적으로 向上시킬수 있는가 하는 問題와 결부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經濟的 福祉問題는 諸學者들에 依하여 屢번히 使用되지만 理論적으로 經濟福祉의 概念은 결코 간단한 것은 아니며 學者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을 내리고 있다.

例컨대 古典學派에 있어서 David Ricardo (1772 ~ 1823) 는 社會總生産物에서 生産活動에 소요된 社會的 生産費를 差減한 純收入이 經濟的 厚生의 참다운 尺度로 보았기 때문에 總體的 福祉는 오히려 分配의 增大에 關係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⁴⁾

要컨대 古典學派는 經濟福祉를 富의 蓄積이나 그의 源泉으로서의 利潤增大의 形式으로 即, 表現을 바꾸어서 現代的 用語로 표시한다면 經濟成長의 意味로서 보았지만 그時代에 必要한 그들의 概念은 그들의 分析을 進歩된 産業社會의 諸問題를 取扱하는 데는 不충분하였던 것이다.

註 4) A. Smithies and Others : Economics and Public Policy, Brookings Lectures, Washington, D.C., 1955, PP.6-12.

따라서 福祉問題에 있어서의 進一步는 新古典學派의 Alfred Marshall(1842-1924) 및 Arthur C. Pigou (1877 - 1958)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

Pigou는 厚生經濟學的 性質을 發展시켜서 近代的 主題의 基礎를 形成하였는데 國民經濟的 厚生은 대체로 國民所得의 크기와 그 社會 構成要員의 分配樣式에 依存하며 餘타의 事情이 같은 限 (Other things are equal) ① 國民所得의 크기의 增加의 어떠한 原因도 一般적으로 經濟的 厚生을 增進시키며 ② 國民所得의 分配가 貧者에 有利하게 變化하는 것은 經濟的 厚生을 增大시키고 그것이 社會一般의 厚生을 增進시킨다는 것을⁵⁾ 지적하고 生産의 增大 및 分配의 均等이 總體的 福祉의 增進이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따라서 經濟的 厚生의 增進은 生活水準의 上昇과 이에 대응하는 所得水準 및 生活水準의 一般의 上昇이라는 것을 意味하고 있는데 Pigou의 見解에 있어서 社會的 經濟福祉의 最適量 (Optimum)은 完全競爭 그대로는 達成되지 않기 때문에 첫째로 所得의 最善의 分配를 達成하기 위하여서는 政府의 施策이 必要하며 둘째로, 소위 [外部經濟] (External Economics)를 達成하여 經濟活動의 범위를 擴大하기 위하여서는 政府의 기능의 확대도 必要하기 때문에 Pigou에 이르러 福祉問題의 커다란 變化와 더불어 經濟政策의 目標과 그 必然性이 더욱 뚜렷해진 것이다.

註 5) Arthur Cecil Pigou, Economics of Welfare, 1924, London P.104.

以上 古典學派와 新古典學派의 二方向의 接近方法에 關하여 論述하였는 바 여기에 第三의 方向으로 發展한 것은 無差別曲線 (Indifference Curve) 에 입각한 Vilfredo Pareto 나 John R. Hicks (1904-) 等의 接近方法이다.

이러한 學者들은 効用의 可測性이나 個人間의 比較와 같은 假定에 依하지 않고 福祉結論을 導出하려고 試圖하였는데 그러나 이같은 接近方法은 各個人이 富裕하든가 또는 富裕하지 않든가 하는 경우에 단 福祉의 增減을 지적할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Pareto 派의 接近方法은 所得의 均衡的 分析에 對해서는 Pigou 가 行한 바와 같이 아무런 基準을 提供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福祉問題가 以上과 같은 發展을 경과하고 있을 무렵 30年代에 일어난 大恐慌은 經濟政策問題에도 새로운 課題를 要請하게 되었으니 古典經濟學에 있어서 最大의 蓄積이 그들의 Vision 이 있던 것과 같이 30年代에 있어서는 完全雇傭이 支配的인 經濟的 要請으로 登場하게 되었던 것이다.

以上 論述한 바 經濟的 厚生과 福祉의 問題는 近代經濟學의 發足當時부터意識되었던 것이나 內容과 分析方法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經濟政策의 賦課된 任務와 目標도 同一 한것은 아니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本質的으로는 各時代의 產物에 不過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現代的 福祉問題를 論하는데 主意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現代의 經濟政策에 있어서도 過去로부터 많은 傳承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即, Keynes 에 依하여 輕視되었던 古典的인 經濟成長의 問題는 오늘날 다시 台頭되고 있으며, Pigou의 所得分配의 問題도 결코 現代的 關心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다.

또한 30年代의 大不況은 다시 同一한 심도로 재발할 可能性은 적다 하더라도 「인프레」와 失業問題는 依然히 남아 있으며 1世紀 前에는 들어 보지 못했던 雇傭의 安定에 政策的 課題를 認定하는 점에서 Keynes 的 方向의 影響은 現在에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나. 所得分配에 對한 「맑스」의 理論

古典經濟學派에서 台頭된 經濟的 厚生問題와 關聯하여 「맑스」의 分配論을 볼것 같으면 「맑스」는 原則적으로 「리칼도」의 分配論으로 부터 影響을 받아 전개되고 있다.

即, 「맑스」가 資本主義經濟社會에 對한 소멸을 豫言하게 된 것은 産業革命直後の 西歐社會, 特히 英國의 初期資本主義 現實을 土臺로 한 것인데 當時의 産業革命과 經濟規模의 擴大가 繁榮된 物質文明을 建設하면서도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私有財産과 自由放任의 原則下에서 生産單位는 相互間에 치열한 競爭을 通하여 小規模의 資本이 도태하고 漸次 独占化되어 가는 傾向을 반복하였던 것

이다.

따라서 「맑스」는 「勞動 價值說」과 「剩餘 價值說」을 中心으로 資本主義社會에서 發生하는 勞, 資間에 對立, 企業 独占의 심화, 궁극적으로는 社會的인 總需要의 감퇴로 因한 恐慌과 資本主義社會의 소멸을 主張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맑스」의 「勞動 價值說」과 「剩餘 價值說」은 根本的으로 分配問題를 中心으로 展開되고 있는데 剩餘 價值說의 根本的인 難點은 모든 生産物의 價值나 利潤의 根拠가 人間의 勞動만에 依해서 創造된다는데 있다.

그러나 特定の 財貨를 生産하기 위하여서는 勞動以外에도 資本이라던가 原料, 企業能力 (Entrepreneurship), 其他의 生産要素等이 必要的인 것인데 資本에 依해서 機械나 原料가 購入되고 勞動者가 雇傭되어 비로서 商品이 生産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財貨의 價値는 資本과 勞動의 混合으로 生産됨으로 그 價値는 當然히 資本과 勞動의 兩便에 歸屬되어야 하나 「맑스」에 있어서는 오직 勞動만으로 創造되기 때문에 勞動者가 價値의 全部를 차지해야 한다고 主張함으로써 勞動의 生産性만 인정하고 資本의 生産性은 認定하지 않고 있는데 이같은 現象은 根本的으로 「맑스」以前의 古典學派 經濟學의 分配問題와 이로부터 연유하는 厚生問題가 勞, 資間의 均衡을 어느정도 상실한데에 기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 오늘날 高度로 發達한 産業社會에 있어서

資本의 重要性은 새삼 強調할 必要조차 없는 것이며 資本의 生産性은 認定하지 않고 勞動으로 生産된 剩餘價值를 착취한다는 理論은 근거가 희박한 것이며 西歐 産業社會의 公同적인 양상은 GNP의 增加와 더불어 계층간의 所得配分은 점차 더욱 평준화 되어 가고 있는데 反하여 蘇聯이 라든가 東西諸國에 있어서는 오히려 投下資本에 對한 利率과 收益性이 더욱 重要視되어가고 있는 現象을 찾아 볼수 있는 것이다.

또한 「맑스」는 勞動者의 賃金이 恒常 再生産過程에서 最少限의 生存을 保障하는 線에서 決定된다고 主張하였으나 經濟가 高度로 發達한 歐美諸國의 경우를 볼것 같으면 勞動者의 賃金도 勞動生産性과 같이 恒常上昇하고 있는 現象을 볼수 있는데 最近에 와서 先進諸國은 이른바 「生産性賃金制」라고 하여 勞賃의 上昇率을 勞動生産性의 上昇率과 一致하도록 法的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現象은 「맑스」의 豫言과는 判異한 現象임을 發見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맑스」의 理論이 타당하다면 賃金水準은 勞動者의 生存線을 保障하는 線에서 決定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같은 線 以上の 것을 意味한다고 해석 한다면 「맑스」의 剩餘價值說은 決局 無意味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오늘날 「맑스」의 豫言되로 勞動者에 對한 착취가 存在한다면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의 勞, 賃間에 不均衡보다 오히려 勞動者의 樂園을 約束하고 있는 共產主義社會에 常存하고 있는 것일 볼 수 있는데 共產主義國家에서 「맑스」가 말한 剩餘生産物은 國民의 福祉向上을 爲해서 使用되지 않고 軍事力이나 獨裁機構 強化에 主로 使用되고 있기

때문에, 勞働価値說, 剩餘価値과 勞働者들의 實質的인 厚生問題는 더욱 顯著한 差異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다. 現代經濟의 政策課題

오늘날의 經濟政策의 主要課題는 여러가지로 分類되고 있으나 그중에서도 主要한 것들 간추려 볼때 A. Smithies는 ① 持統的인 經濟成長과 安定된 雇傭水準 ② 「인프레」 없는, 物 價水準의 安定과 均衡的 所得配分 ③ 市場機構를 통한 資源의 最適配分等을 들고 있다.

여기서 持統的인 成長이 라는 것은 1人當 實質所得의 持統的 增加를 意味하여 소위 經濟福祉의 實質的 內容을 말하는 것으로서 生産力의 增加가 1人當 平均所得을 增加시키는 상태가 經濟成長이라고 할 수 있다.

R. F. Harrod는 經濟成長을 勞働人口와 1人當 生産物 또는 所得과 利用되는 資本量等의 세가지의 基本的 要因의 相關關係로서 考察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要件데 成長이 없이는 經濟的 변영도 福祉의 增進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다만 現代經濟社會에 있어서는 古典學派의 時代와는 相異한 狀況下에서 그들이 언급하지 않은 經濟成長의 理論的 內지 政策的 研究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多幸이 '50年代와 '60年代에 나타나고 있는 現象을 보면 資源의 「最適配分」에 依한 經濟成長率은 共產主義經濟體制 보다도 西方自由主義 經濟體制가 훨씬 높다는 것이 特徵이다.

다음으로 「인플레이」의 방지와 雇傭問題는 自由主義經濟가 當面한 問題로서 經濟 그 자체가 不斷한 動요를 일으켜 國民生活이 곤란하게 되는 現實的 要請에서 問題化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所得配分 및 社會的 均衡化問題에 있어서는 Pigou의 이론바 國民所得의 適正한 分配로 부터 始作하여 Smithies에 있어서는 均衡的 所得分配와 社會保障으로 되어 있으며 社會的 均衡이 라고 일컬어 지게 된 것은 아마도 經濟政策에 있어서 最終的이고도 가장 主要한 目標도 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國際經濟政策面을 들 수 있다.

終來의 封建經濟體制에서 開放經濟體制로 移行됨에 따라서 國際經濟가 國民經濟에 미치는 영향과 國民經濟가 國際經濟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一國의 經濟政策을 고려할 경우 國際經濟環境을 無視하고서는 精確한 國內經濟政策의 수립을 期待할 수 없다.

그러므로 國際的 側面에서는 國際經濟의 安定等을 표방하고 있는바 貿易의 多角化, 地域的 自由化, 國際收支均衡問題, 通貨의 交換性等이 政策的 論題가 되고 있음은 勿論이나 오늘날 大部分의 自由主義 諸國에 있어서는 開放體制下에서 地域的인 特化, 分業의 擴大, 資本의 輸出入等 急激한 經濟發展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特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比하여 共產國經濟體制는 閉鎖體制下에서 技術革新의 낙후, 地域的 特化의 制限된 범위내에서 낮은 水準의 經濟發展과 成長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特徵인데 현재 蘇聯을 포함한 東歐諸國은 '60年代에 들어와서 東·西貿易의 擴大로 因하여 그들 潛在貿易量을 增大시키고 있으나, 中共이나 北韓과 같은 經濟發展이 落後된 共產諸國은 아직도 政治的 明分을 앞세워 閉鎖體制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經濟發展에 制約要因을 더욱 加重시키고 있는 現象을 볼 수 있다.

第3章 国民總生産(GNP)의 增加率

厚生函数의 相關關係比較

經濟 및 社会体制과 制度를 달리하고 있는 韓國과 北韓의 国民總生産(GNP)에 對한 增加率과 이에 對한 租稅負擔率을 比較한다는 것은 주어진 資料가 充分하다 하더라도 制約要因을 形成하게 되는데 그理由로서는 첫째, 總生産에 對한 概念이 다를뿐 아니라 算定方法과 範圍가 다르며 둘째로, 財政現象은 各己 國家社会의 經濟現實을 反映하는 것이기 때문에 經濟体制과 政策이 追求하는 目標가 달라짐에 따라 財政現象도 各己 달라지기 때문이다.

資本主義 經濟体制에 있어서의 財政의 役割은 時代가 變遷함에 따라 그 重要性을 더해가고 있는데 反하여 오늘날 共產主義經濟体制은 制限된 民間部門의 經濟活動의 認定과 價格機能의 認定, 企業의 利潤制導入과 獨立採算制 등으로 因하여 政府의 重要性이 蘇聯과 東歐諸國에서는 미미한 정도이지만 漸次 감소해 가고 있는 事實이다.

社会体制가 生活의 改善을 不斷히 追求하는 人間의 本能自体를 變更시킬수 없는 것이라면 時代가 變遷함에 따라 社会主義体制도 修正되어 갈 것이며 이에 따라 財政의 役割도 絶對的인 位置에서 漸次 相對的인 位置도 서서히 變해갈 것이라고 展望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資本主義体制에 있어서 財政活動은 相對的인 意味를

갖는 것이며 그重要性이 漸次 增大해 가고 있는 反面에 社會主義 體制에 있어서의 財政活動은 絶對的인 意味를 갖고 있는 것이지만 그重要性이 漸次 減少하고 있는 傾向을 나타내고 있다.

本章에서는 이미 第2章에서 說明한 國民厚生에 對한 諸學說을 기초로 하여 南·北韓의 國民總生産의 增加率에 對한 國民租稅負擔率과 軍事費負擔率의 相關關係를 分析의 對象으로 하였다.

國民厚生の 巨視的(Macro) 側定은 一次的으로 各己 政策目標에 따른 資本의 蓄積率과 密接히 關聯되어 있으며 擴大再生産過程에서 的 資本의 蓄積率은 무엇보다도 國民의 租稅負擔率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點 間接稅形態를 爲主로 하고 있는 共產主義 經濟體制도 同一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各己 政策의 目標가 相異함으로서 야기되는 國民厚生과 關聯이 없는 軍需産業과 國防費의 支出現況이 차이를 招來함으로서 實質的인 住民厚生은 顯著한 影響을 받고 있기 때문에 軍事費負擔率과 租稅負擔率의 差異를 淸구명하는 것이 바로 巨視的 側面에서의 厚生函數(Welfare Function)를 淸정하는 要因으로서 台頭하고 있는 것이다.

가. 國民總生産의 增加率 比較

지난 10年(1963~1973)은 韓國經濟史에서 하나의 轉換期 的인 激變期로 記錄될 수 있을 것이다. 傳統社會에서 「跳躍段階」

를 거쳐 高度成長期를 치루었고 向期間에 輸入規模가 비약적으로 增加하였으며 産業基盤의 近代化가 本格的으로 뿌리를 내리기 始作하였다.

우선 總量面에서 지난 10年동안의 実績은 '60年代 後半期부터 高度成長이 点火되어 '65年부터 '74년까지 平均 10.3%의 成長率을 이룩한 점을 들수 있다. (表 3 - 1)

(表 3 - 1) 經濟開發計劃과 実績 (韓國)

項 目	基準單位	1次計劃 主要指標		2次計劃 主要指標		3次計劃 主要指標	
		計劃	実績	計劃	実績	計劃	実績 72-74
GNP 成長率	年平均 (%)	7.1	7.7	7.0	10.5	8.6	10.6
産業別成長率							
農林水産	" "	5.7	5.1	5.0	2.3	4.5	4.7
鎡工業	" "	14.8	14.1	10.7	20.3	13.0	20.2
社会間接 資本기타	" "	4.6	8.3	6.6	12.3	8.8	8.1
1人当 GNP	目標年度 (달러)		126		275	389	513
投資率	" "	17.0	16.6	19.0	26.3	24.9	25.7
国内貯蓄率	年平均 (%)	9.2	6.9	11.6	14.8	19.5	18.6
貿易輸出	目標年度 (백만달러)	137.5	250.3	550.0	1,132.3	3,510	4,600
貿易輸入	" "	492.3	716.4	893.5	2,394.3	3,993	6,844

經濟開發 5 個年計劃은 5.16 以後 '62 年에 1 次 5 個年計劃이 始作되어 내년으로 3 次 5 個年計劃을 마치고 '77 年부터 4 次 5 個年計劃이 推進될 예정이다.

期間의 政府主導型의 高度成長政策은 1 次 5 個年計劃期間에는 主로 電力, 石炭等 基礎「에너지」開發과 基幹産業과 社会間接資本 扩充에 主력하였고 輕工業을 위지한 輸入 代替産業에 모든 施策을 集中하였음을 볼 수 있다. (表 3 - 2)

(表 3 - 2) 開發計劃의 目標 (韓國)

	第 1 次 5 個年計劃	第 2 次 5 個年計劃	第 3 次 5 個年計劃
基本目標	①電力, 石炭등 에너지 資源開發 ②基幹産業과 社会間接資本 扩充 ③輸出 增大와 輸入 代替産業 育成 ④農 業生産力 增大	①鐵鋼, 機械등 工業 構造 高度化 ②輸出의 획기적 增大와 輸入 代替 促進 ③農家所得의 增大 ④科學技術의 振興	①重化學工業의 育成 ②輸出 伸張과 貿易 구조 개선 ③食糧의 自給과 農家所得 增大 ④國土의 綜合的 開發 ⑤科學技術의 혁신

다음 2次 5個年計劃의 目標은 重工業部門을 中心으로 한 鐵鋼, 機械工業等을 위시하여 産業構造의 高度化와 農家所得增大 및 科學技術의 振興에 主력 하였으며, 3次 5個年計劃은 重化學工業의 集中的인 育成과 食糧自給 및 農家所得增大策으로서 都市와 農村間에 所得配分の 均衡을 위한 施策과 더불어 國土綜合開發과 科學技術의 革新에 重點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같은 政府의 成長政策에 依한 高度成長에 힘입어 韓國은 '65년부터 '74년까지 10年間 國民總生産은 30億弗에서 172億弗로 經濟規模가 5.7倍로 擴大된 事實을 볼수 있으며 이에 따라 人口 1人당 國民所得도 '65年度의 106弗에서 '75年度 513弗에 達함으로써 約 4.8倍나 增大된 事實을 볼수 있다. 輸出은 同期間동안에 1億7,500萬弗에서 46億弗로 26.2倍, 輸入은 4億6,300萬弗에서 68億弗로서 14.8倍가 增加하였으며 무엇보다도, '60年代 後半부터 製造業部門의 急激한 成長率이 顯著한데 '70年代에 들어와서도 平均成長率이 20%를 상회하고 있는 現象을 볼수 있으며 이같은 事實은 北韓이 現在 追求하고 있는 6個年計劃의 工業部門의 平均成長率 14%를 크게 상회함으로써 2次産業分野의 急激한 發展相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反面 北韓은 '60年代에 들어와서 부터 社會主義工業化가 完成되고 農村이 비약적인 發展을 이루어 名실공히 經濟建設이 完了된다는 目標下에서 推進된 7個年計劃(1961~'70)이 失敗하자 北韓은 지난 '65년부터 公式的인 統計조차 發表하지를 못하고

防衛産業育成과 軍事力強化로서 住民들의 不滿要因을 除去하고 있는 実情이다.

即, 지난 '60年代의 7個年計劃期間中 重工業에의 集中投資로 因한 生産財生産의 增加는 軍需工業基地를 強化하는데 기여케 되고 이로 因한 中央財政調達の 硬塞이 輕工業發展을 압박하고 있는데 더하여 農業部門이 輕工業原料의 태반을 供給하는등 産業間 커다란 不均衡이 持續되어 왔던 것이다.

또한 '70年代에 들어 와서 現行 6個年經濟計劃을 推進하는 過程에 있어서도 主로 지난 期間까지 이룩해 놓은 産業의 内部的 취약성을 補完하며 技術革命의 次元을 提高하는데 力點을 두고서 産業立地條件의 不利點을 극복하면서 地域單位經濟體制 구축을 수행 함으로서 80年代에 自立經濟達成과 南·北韓經濟發展競争에 대응하 려는 企圖를 明白히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北韓의 GNP 및 1人當 GNP의 增加推移를 1965부터 1974年까지 볼 것 같으면 同期間의 GNP의 增加率이 約 2.6 倍에 達함으로서 韓國의 5.7 倍에 比하여 절반에 미달하고 있는 実情을 볼수 있으며, 1人當 GNP는 同期間에 韓國이 4.8 倍에 達하고 있 으나 北韓은 2.2 倍의 增加에 머무르고 있는 現象을 볼 수 있다.

(表 3 - 3)

以上 '60年代 中半期부터 '74年度까지의 10年동안 南·北韓의 GNP 및 1人當 GNP의 年度別 變化推移를 檢討하였으나 嚴格한 意味에서의 南·北韓 國民所得을 正確히 比較하는데 있어서는 北韓

(表 3 - 3) 北韓의 GNP 및 1人当 GNP 增加推移

年 度	GNP (千萬\$)	1人当 GNP (弗)
1963	163	139.8
1965	181	146.7
1967	211	163.3
1969	272	201.7
1970	319	225.0
1971	346	241.4
1972	375	255.4
1973	445	295.3
1974	482	313.1

資料；国土統一院，南北韓經濟現況比較，1975

国土統一院，北僞經濟統計集，1973 참조

의 所得計定方法과 概念이 相異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制約條件이 있으나 問題는 北韓의 産業構造나 GNP의 算定근거가 주로 独裁主義的인 生産管理와 分配樣式에서 歪曲되고 不公平한 二重的 數值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混亂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北韓의 1人当 GNP 水準이 그들이 發表한 대로 '70年度

에 225 \$ 水準과 '74 年度에 313 \$ 水準에 이르고 있다 하더라도 이같은 事實이 곧 住民들의 富라 언가 生活水準의 向上을 意味하는 것이 못되는데, 313 \$ 에 達하는 1人當 國民所得은 大部分 軍事費 支出에 支應된 所得分配과 同時에 年間 對 GNP 30% 以上에 達하는 高度의 投資財源을 住民들의 強制蓄積으로 持續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總體的으로 나타나는 GNP 規模와 1人當 GNP 水準에서 이같은 強制蓄積에 依한 租稅負擔率과 軍事費負擔率을 制外해야만 實質的인 厚生函數를 比較할 수 있는 것이다. (1)

나. 南·北韓租稅負擔率의 相關關係 比較

自由主義 經濟體制下의 韓國에서의 財政活動과 投資의 行態는 政府部門, 民間部門, 그리고 海外部門으로 構成된 國民經濟活動의 政務部門에 해당하고 있으며 政府部門도 弱極的으로는 民間經濟 活動의 正常的인 發展과 그 土臺를 提供하기 위해 存在하고 있다.

또한 投資活動에 있어서도 政府가 強力한 經濟開發計劃을 推進하고 있고 投融資政策에 依해 資源配分에 크게 介入하여 經濟活動을 主導해 나가는 面이 있기는 하나 個人의 私有財產制度에 立脚하고 있는 經濟體制下에서, 政府의 財政活動이란 어디까지나 民間經濟活動과 병행하면서 그 補完手段으로서의 性格을 強力히 띠우고 있는 根本 趣旨에는 變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에 反하여 玩固한 共產主義 經濟體制를 緊持하고 있는 北韓에
 서의 財政活動은 그意味를 크게 달리하고 있는데 北韓에서는 制
 限된 範圍內에서의 民間의 經濟活動도 거의 存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政府의 財政活動은 國民經濟活動의 全部門을 反映하는 것이
 라 해도 過言이 아니며 特히 投融資活動에 있어서는 民間에 依한
 活動이 全無한 것이 特徵이다.

따라서 南·北韓의 租稅負擔率을 比較하면 다음과 같다.

(1) 國民租稅負擔率

韓國에서의 租稅收入의 對GNP 比率 即, 國民租稅負擔率은 1965
 年度의 7.2%에서 漸次 增加하여 1969年度의 14.1% 1970年度
 의 14.5%를 各各 示顯하고 있으며 이같은 國民租稅 負擔率은 經
 濟規模가 拡大, 發展함에 따라서 더욱 增大될 것이 豫想된다.(表3-4)

(表3-4) 韓國의 租稅收入의 對GNP 比率

단위 : 백만원

年 度	GNP (A)	租稅收入 (B)	B / A
1965	805,850	58,232	7.2
1966	1,032,040	95,973	9.3
1967	1,242,350	139,434	11.2
1968	1,575,650	211,190	13.4
1969	2,047,110	288,559	14.1
1970	5,545,920	367,969	14.5

資料 :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國稅庁, 國稅統計年報

註 : ① GNP는 經濟市場價格

② 租稅收入에는 關稅와 專賣益金을 包含

한편 北韓에 있어서는 社会總生産額에 對한 租稅收入의 比率를
 보아야 하는데 租稅收入에 對한 統計가 없기 때문에 稅入構成中
 其他收入을 除外한 項目이 歲入總額에서 찾아하는 比重을 適用하여
 檢討해 보기로 한다.

即 (表 3 - 5) 에 依하면 1965 年度의 社会總生産에 對한 歲入
 豫算總額의 比重은 34.3 % 임을 볼 수 있다. 그리고 其他收入을
 除外한 여러歲入項目이 歲入總額에서 찾아하는 比重이 91 % 정도
 임으로 이二数字를 적용하여 社会總生産額에 對한 租稅收入의 比重
 을 計算해 보면 國民租稅負擔率은 1965 年度에 約 31 % 線을 능가
 하고 있는 現象을 볼 수 있다.

(表 3 - 5) 北韓豫算의 對社会總生産額 比重 (單位: 100萬北僞元)

年 度	社会總生産額	歲 入	歲入比重	歲 出	歲出比重
1961	7,506.9	2,400.00	31.7	2,338.00	30.9
1962	8,398.3	2,289.36	34.5	2,728.76	32.5
1963	9,191.0	3,144.82	34.2	3,028.22	32.9
1964	10,110.0	3,498.78	34.6	3,418.24	33.8
1965	10,481.2	3,593.84	34.3	3,476.13	33.2

資料: 北僞現況, 國際問題研究所, 1971

北僞經濟統計集, 國土統一院, 1971

註: 1966 年 以後의 社会總生産額은 發表된 資料가 없어 比
 較할 수 없음.

北韓은 지난 '65年以後 그들 社会總生産額에 對한 発表을 中止하고 있으나 이같은 比率이 크게 變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結局 지난 1970年度에도 30%를 增加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同年의 韓國에서의 租稅負擔率 14.5%와 比較해보면 北韓住民은 韓國에 比하여 約2倍가 넘는 租稅負擔率을 감수하고 있는 事實을 볼 수 있다.

더욱이 北韓의 社会總生産推計過程에 있어서는 二重計算이 따르기 때문에 社会總生産額은 國民總生産額보다 恒常 過大評價됨을 감안한다면 北韓의 租稅負擔率은 30%보다 훨씬 높은 水準에 있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2) 直接稅와 間接稅의 比重

北韓에 歲入構成表를 볼것 같으면 北韓의 去來收入金은 韓國의 物品稅와 營業稅의 性格을 띠우고 있음으로서 名實共히 間接稅形態의 特徵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國民諸稅는 所得稅의 形態로서 直接稅이고 國家企業利益金과 協同團體의 所得稅는 法人稅와 事業所得稅의 性格을 띠우고 있는 것으로서 直接稅임이 分明하다. 따라서 北韓에 있어서 歲入總額에 對한 直接稅와 間接稅의 比重은 大略 다음과 같이 分類할 수 있다. (表 3-6)

이에 反하여 同期間의 韓國에 있어서의 歲入總額에 對한 直接稅와 間接稅의 比重을 檢討해 보면 다음과 같다.

(表 3 - 6) 北韓의 歲入中 直接稅와 間接稅의 区分

直 接 稅	22 - 23 %
間 接 稅	65 - 70 %
其 他 收 入	8 - 9 %
歲 入 總 額	100

여기에서는 北韓과의 比較를 위해서 廣義의 間接稅概念을 使用하여 그比率를 計算해 보았는데 卽, 間接稅에는 一般的인 間接稅와 함께 關稅와 專売入金 및 印紙收入이 포함되고 나아가서 普通 直接稅目으로 보는 營業稅도 間接稅에 包含시켰다. 왜냐하면 營業稅는 利潤이나 所得發生에 關係없이 売上高와 營業行爲에 對하여 課稅하는 것이기 때문에 嚴密히 말하면 間接稅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歲入總額에서 直接稅가 차지하는 比重은 1966年度에 25.8%, 1970년에는 29.3%로서 漸次 增加하는 趨勢에 있으며 間接稅의 比重은 1966年度에 47.4%, 1970年度에 48.8%로서 恒常 50%를 下廻하고 있다. (表 3 - 7)

이와 같이 韓國에서의 間接稅의 比重은 50%를 下廻하는데 反하여 北韓에서는 70%以上을 記錄하고 있는 現象을 볼수 있는데 元來 直接稅는 國民이 租稅負擔을 直接的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負擔의 輕重이 뚜렷하여 稅制의 合理化가 크게 要望되는 것이

(表 3 - 7) 韓國의 歲入總額에 對한 直, 間接稅의 比重)

(單位: 1,00萬圓)

年 度	直 接 稅	比 重	間 接 稅	比 重	歲 入 總 額
1966	33,801	25.8	65,172	47.4	131,143
1967	51,099	23.7	88,335	41.0	215,464
1968	77,702	28.5	133,488	49.0	272,460
1969	110,423	28.0	177,636	45.0	394,639
1970	138,605	29.3	299,364	48.4	473,541

資料: 韓國銀行, 統計年報

이 다른 한편으로 間接稅는 궁극적으로는 國民인 一般消費者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財貨의 價格에 은폐되어 轉嫁되기 때문에 國民이 直接的으로 느끼지 못하는 特性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租稅制度가 合理的으로 整備되지 못한 社會에서는 이같은 間接稅에 比重하는 傾向을 볼 수 있는 것이 特徵이다.

특히 오늘날 北韓에서는 間接稅가 全體歲入總額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무려 70% 이상에 달하고 있다는 事實은 모든 生産手段이 國有化되어 있기 때문에 國營企業의 利益金으로서 充當되는 그들 社會主義經濟收入이 間接稅의 形態로서 거두어 들여지기 때문에 實際에 있어서 勤勞所得稅의 性格을 띠우고 있는 住民諸稅가 2%에

不過하다는 事實은 住民들에게 直接的인 負擔感을 別로 주지 않으면서 實質적으로 過重하게 間接稅에 偏重함으로써 그結果는 全体的인 내핍생활과 消費財價格의 高値策定現象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租稅收入中 直接稅와 間接稅의 比重을 보면 韓國에 있어서 直接稅는 租稅收入中 1965年度에 32.5%, 1970年度에 37.7%로서 每年 增加하는 趨勢에 있으며 間接稅가 減하는 比重은 1965年度에 67.5%, 그리고 1970年度에 62.3%로서 減少하는 趨勢를 보여줌으로서 合理的인 稅制의 方向으로 發展하고 있는 事實을 볼 수 있다.

이같은 事實을 要約하여 보면 自由主義經濟體制下의 韓國은 直接稅의 比重이 擴大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合理的인 稅制下에서 얼마만큼 階層間 所得分配의 均衡이 이루어 지느냐가 문제의 초점으로 되고 있으며 間接稅爲主의 社會主義統制 經濟下에 있는 北韓은 國營企業의 利益金을 어느 水準에서 徵收하며, 生活必需品인 消費財價格을 얼마만큼 引下하여 生産活動에 참여 하고 있는 근로대衆들의 生活水準을 強要된 內핍생활에서 해방시켜주는가 하는 問題가 厚生函數比較의 主要적 側面이 되는 것이다.

다. 軍事費負擔率의 相關關係

오늘날 北韓의 歲出豫算 가운데 가장 顯著한 特徵으로 注目되는 것이 國防費의 比重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國防費의 比重은 總歲出에서 約30%를 上廻하고 있으며 '70年代에 들어와서 北韓이 名目上의 國防費를 여타의 頂目에 은폐하고 있으나 現在에도 20% 水準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은 國防費의 總額이 GNP에서 찾아하는 比重이 問題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北韓의 GNP를 正確히 推定한다는 것은 現在로서는 不可能한것 같으나 한가지 留意하여야 할 事實은 財政規模가 GNP에 찾아하는 比重이 自由主義國家에 있어서 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다.

現在 蘇聯을 비롯한 東歐諸國의 경우에도 거의 GNP에 60~70% 정도가 直接的으로 國家豫算의 支出로서 形成되고 있다. 北傀에 있어서도 어느面으로 보든지 豫算總額이 GNP에 찾아하는 比重은 東歐諸國에 있어서의 그것보다도 더 큰것이 確實하기 때문에 約80~85% 정도가 될것이 豫想되고 있다.

특히 國防費에 對해서는 '71年度의 北傀의 豫算案提案說明에서 「經濟建設과 國防建設併進에 對한 戰略方針에 따라 歲出總額의

30% 資金을 國防費에 支出하고 이豫算은 現實情에 맞는 性能높은 武器와 軍需機資材를 生産하며 모든 部門에서 戰略物資를 豫備하고, 戰時生産을 穩固히 保障할 수 있도록 戰爭準備에 만전을 期하는데 使用한다」고 宣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The Financial Times」의 磅貨對 北僞의 換時勢 $£ 1 = 6.17$ 円 北僞円으로 換算) 로선 北僞의 '71年度 國防費는 韓國의 同年度 國防費(軍援除外) 4億弗의 2.1倍에 해당되며 1人當 國防費 負擔額으로는 韓國의 4.7倍에 達하는 方대한 現象을 볼 수 있다.

라. 租稅負擔率 및 軍事費負擔率과 厚生函數와의 關係

이제껏 우리는 本章을 通하여 南, 北韓의 總量指標로서의 GNP의 成長과 1人當 GNP의 比較를 爲始하여 國民의 租稅負擔率과 軍事費負擔率을 各各 考察하여 보았다.

生活水準의 側定과 厚生函數의 比較는 GNP에서 擴大再生産活動을 위한 總投資率과 國民의 實質的인 生活水準과 相關이 없는 軍事費를 除外해야 만이 眞정한 厚生函數를 側定할 수 있을 것이다.

租稅負擔率에 있어서는 自由主義經濟體制下에서의 韓國에서는 直接稅를 重視하고 있으며 共產主義體制下에서의 北韓은 間接稅爲主로

서의 投資財源의 蓄積을 確保하고 있음을 보아 왔다.

'75年度 国土統一院이 發表한 資料에 依하면 韓國의 GNP는 '74年度에 171.2億弗이며 同年의 北韓의 GNP는 約 48.2億弗로 推定되고 있다. 따라서 1人當 國民所得은 韓國이 513弗이며 北韓이 313弗로서 約 200弗 水準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表3-8)

(表 3-8) 南·北韓 厚生函數의 比較(1974)

区 分	韓 国	北 韓
1人當 GNP (弗)	513	313
總 投 資 率 (%)	30.0	35
1人當 投資額 (弗)	154.1	109.5
國防費 / GNP (%)	(4.2)	(13.9)
1人當 國防費 支出額 (弗)	21.7	43.5
1人當 消費水準 (弗)	337.2	160.0

資 料 : 南·北韓 經濟現況報告에서 作成

国土統一院, 1975.

그러나 總投資率의 比率은 韓國이 對GNP에 30%, 北韓이 35%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韓國에서는 이中 상당한 部分을 外資에 依存하고 있기 때문에 實際로는 名目上 나타난 1人當 投資額의 154 弗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北韓에서는 35%의 높은 投資率을 自体調達함으로써, 오늘날 北韓住民들의 1人當 投資額은 約110 弗에 達하고 있다.

또한 對 GNP 軍事費負擔率은 1974 年度의 韓國은 4.2%인데 比하여 北韓은 13.9%의 높은 比重을 찾아 하고 있다. 이같은 比率은 韓國의 1人當 軍事費負擔額이 約22 弗에 不過하나 北韓은 約44 弗로서 現在에도 約2 倍에 達하고 있는 現象을 볼수 있다.

따라서 이같은 現象은 南·北韓의 投資率과 軍事費負擔率의 차이로 因하여 實質的인 生活水準은 韓國의 337 弗對 北韓의 160 弗이런 懸絶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으로 北韓이 그들의 好戰性을 버리고 軍事費負擔을 줄이고 投資의 效率性을 增大시키지 않으면 南·北韓의 厚生函數는 尙차 더욱 큰 격차를 야기시킬 것임이 分明하다.

第4章 階層別 所得配分 現況과

經濟部門別 交易條件의 比較

前章에서는 南·北韓國民所得의 成長率과 所得增加로 부터 派生하는 1人當國民所得水準과 關聯하여 GNP에 對하여 實質的인 厚生函數를 巨視的인 側面에서 檢討하여 보았다.

本章에서는 이같은 巨視的인 側面과 併行하여 階層間 所得分配現況을 檢討함으로서 兩體制間에서의 財貨의 分配問題와 經濟各部門別 交易條件을 檢討함으로서 主로 微視的인 側面에서 國民厚生問題를 檢討의 對象으로 하였다.

왜냐하면 오늘날 自由主義諸國, 特히 開發途上國에 있어서는 經濟規模의 急激한 膨脹과 産業構造의 近代化過程에서 階層間 分配問題가 重要視되고 있으나 劃一的인 全体主義 社會에 있어서는 分配所得의 絶對水準은 低位에 있으나 階層間 分配의 不均衡問題는 自由主義 經濟社會보다 덜 심각하게 惹起되는 것이 하나의 普遍的인 現象이다.

그러나 經濟部門別 交易條件의 比較는 價格機能이 資源의 適定配分을 조정하고 있는 資本主義 社會에서는 별로 크게 問題視되고 있지 않으나 共産獨裁經濟體制는 그들이 추구하는 特定目標에 따라 經濟計劃이 이루어지고 있기때문에 經濟部門別 交易條件의 比較檢討가 크게 問題視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제껏 北韓에서는 住民들에게 內需생활을 強要한 結

果 工業部門에 있어서도 重工業에 優先的인 資源配分을 強行함으로써 輕工業部門을 犧牲시켰고 이같은 結果는 輕工業製品에 對한 間接稅의 부과로서 消費財價格의 상승과 工業部門에 對한 投資財源을 主로 農業部門에서 얻출한 結果로서 農工產品間의 交易條件의 比較는 심한 不均衡을 惹起시킴으로서 農民들의 生活水準의 궁핍상은 더욱 두드러진 現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가. 階層別 所得配分 現況

前章에서는 總體的 側面에서의 南·北韓의 國民所得의 成長「패턴」을 檢討하였는데 '60年代의 韓國의 高度成長이 國民所得分配의 어떠한 變化를 가져 왔는가하는 微視的 側面을 볼때 最近 IBRD와 英國의 Sussex大學의 共同研究結果를¹⁾ 보면 經濟成長과 所得分配에 關한 研究對象이었던 66個國 가운데 韓國은 所得隔差가 比較的 낮은 Group에 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即, 總家計를 所得額의 順位에 따라 低所得家計 40%, 中所得家計 40%, 나머지 高所得家計 20%로 区分한 다음 이들이 차지하는 所得의 比率을 國家別로 区分한 것이 <表 4-1>이다.

註 1) Redistribution with Growth, Development Research Center, IBRD.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Sussex University.

<表 4 - 1> 所得水準과 分配平等度別 諸國家의 分類
(不平等度가 낮은 國家)

國 別(年度)	1人當 GNP (\$)	(低所得層) (40%)	中間所得層 (40%)	高所得層 (20%)
차 트(1958)	78	18.0	39.0	43.0
스리랑카(1969)	95	17.0	37.0	46.0
니제르(1960)	97	18.0	40.0	42.0
파키스탄(1964)	100	17.5	37.5	45.0
우간다(1970)	126	17.1	35.8	47.1
타이(1970)	180	17.0	37.5	45.5
韓國(1970)	235	18.9	37.0	45.0
대만(1964)	241	20.4	39.5	40.0
수리남(1962)	394	21.7	35.7	42.6
그리스(1957)	500	21.0	29.5	49.5
유고슬라비아(1968)	529	18.5	40.0	41.5
불가리아(1962)	530	26.8	40.0	33.2
스페인(1965)	750	17.6	36.7	45.7
폴란드(1964)	850	23.4	40.6	36.0
日本(1963)	950	20.7	39.3	40.0
英國(1968)	2,015	18.8	42.2	39.0
美國(1970)	4,850	19.7	41.5	38.8

韓國은 低所得層이 總所得의 18.0% , 中所得層이 37% , 高所得層이 45%로서 66個國中 단연 隔差가 가장 낮은 Group에 屬하고 있다. 特히 低所得層의 總所得占有率만을 比較할 때 韓國은 西歐의 많은 國家들 보다도 平等度가 높은 注目할 만한 事實이다.

所得分配의 隔差問題는 恒常 絶對的 貧困問題와 聯関되는데 全休人口中 絶對的 貧困層에 屬하는 比率이 크면 클수록 分配問題가 심각한 社會問題로 抬頭되기 때문이다.

特히 1人當 GNP 50弗과 75弗을 任意의 貧困線으로 定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貧困層의 人口를 보면 韓國의 人口中 50弗以下는 5.5% , 75弗以下는 17%로서 여타의 開發途上國에 比하여 貧困層의 比率이 極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例를 들어 「필립핀」과 比較하여 보면 1969年 1人當 GNP는 「필립핀」이 韓國보다 높은데 比하여 75弗總以下에 屬하는 人口는 全休의 30%로서 韓國의 比率보다 월등히 높은 現象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韓國은 1人當 GNP 水準이 比較的 낮으면서도 貧困線에 屬하는 總人口의 比重이 낮다는 事實은 階層間 所得分配가 比較的 公平하다는 事實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 1962년부터 이제껏 推進하여 온 經濟發展과 階層間 所得分配의 平準化過程에서 우리에게 가장 主要한 것은 生活水準의 向上이다. 即 經濟成長과 近代化를 通하여 國民所得水準이 向上되고 그로 因하여 貯蓄의 力이 增大하였을 뿐 아니라 質的인 面에서도 生活「패턴」의 多樣化와 近代化가 이루어 지고 都市와 農魚村間의 所得水準의 隔差가 縮少

되었으며 生活環境의 改善等을 通하여 國民生活의 安定化가 크게 進展되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같은 所得水準의 向上은 過去 1961年度에 82.6%에 達하였던 民間消費支出의 對GNP比率도 漸次 감소되어 1973年度에는 68.2%로 크게 改善되었으며 아울러 國民의 貯蓄水準은 크게 向上되어 經濟發展의 계속적인 追求를 위한 原動力으로서 作用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國民所得水準의 量的 增大는 民間消費生活의 양상에도 變化를 招來하였는데 即, 民間消費支出의 「패턴」을 보면 1次消費라고 할수 있는 飲食物費의 比重이 1961년에는 62.7%의 높은 比重을 차지하였으나 1966年度에는 58.7%로 그리고 1973年度에는 51.1%로 계속 낮아지고 있어 所得水準의 向上에 따른 飲食物費 比重의 低下라는 「엔겔」의 法則이 뚜렷하게 作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表 4 - 2>

<表 4 - 2>

民間消費支出「패턴」의 改善推移

(70年度 市場價格)

	1次消費	2次消費 (%)				3次消費
	飲食物費 %	被服費	住居費	光熱費	小計	雜費%
1961	62.7	10.2	6.9	4.5	21.6	15.7
1966	58.7	9.4	6.8	5.4	21.6	19.7
1971	52.6	12.3	6.6	4.5	23.4	24.0
1972	52.2	12.9	6.7	4.3	23.9	23.9
1973	51.1	13.6	7.1	4.3	25.9	23.9

資料 : 韓國銀行, 「韓國의 國民所得」, 1973 및 調査月報, 1974.4.

反面에 第2次消費라고 할수 있는 被服費, 住居費, 光熱費 등의 支出比重은 '61年度の 21.6%에서 '73年度에는 25.0%로 조금씩 增加하고 있으며 第3次消費라 할수 있는 保健, 美容, 交通通信費, 遊興·娛樂費等 文化的 支出은 더욱 크게 늘어나 '61年度の 15.7%에서 '73年度에는 23.9%가 되었다.

이와 같은 現象은 所得水準의 向上에 따라 民間消費生活의 양상이 漸次 다양화되고 近代化되어 가고 있음을 反映하는 것이다.

결으루 1960年度부터 '72年度에 이르기까지 生活水準의 向上된 모습을 實証的 統計를 通하여 살펴보면 1人當 纖維消費量은 1.8 배, 1人當 紙類消費量은 4.6 배, 1人當 「에너지」消費量은 1.8

倍, 電話保有台數는 3.5 倍, 「라디오」普及台數는 4.8 倍, T.V 普及台數는 96.7 倍가 各各, 增加하였음을 볼수 있다. <表 4 - 3 >

<表 4 - 3 > 主要生活指標의 變化

品目 및 單位	1961 (A)	1972 (B)	B/A
1 人當 纖維消費量(kg)	2.9 ¹⁾	5.2	1.8
• 紙類消費量(%)	3.3	15.2	4.6
• 에너지消費量(%)	750	1,363	1.8
1 千名當 電話保有台數(台)	5.8	20.2	3.5
• 라디오普及台數(%)	25	121 ²⁾	4.8
• TV 普及台數(%)	0.3 ¹⁾	29	96.7

註 1) 1960 年值임.

2) 1973 年值임.

資料: 經濟企劃院, 韓國經濟年鑑, 1974.

한편北韓의 福祉政策의 基本方向은 지난 '71年 11月 第5次 党大會에서 採択된 6 個年經濟計劃에서 「人民生活의 均衡的 發展」에 두고 '70年代 中半期까지의 具體的 施策方向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戰力增培養을 優先的으로 確保한 後에 住民生活向上을 圖謀한다고 함으로서 最大限의 節約과 蓄積으로 戰爭準備와 祖國統一의 革命的 大事業을 動的으로 맞이할 수 있는 物質的 準備를 先次的으로 圖謀하면서 모든 勤勞者들의 生活을 다같이 고르게 높여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으며 所得隔差의 縮少 및 階層間 所得의 均等化에 있어서는 「勞動者와 農民의 生活水準에서의 差異, 都市와 農村住民들의 生活條件에서의 差異를 빨리 없애야 한다」는 것이며 그방도로서는 勞動者의 現在 生活水準으로 農民生活을 끌어 올리도록하여 所得의 均衡을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로, 國民所得 1.8 倍의 提高에 따라 勞動者 事務量의 月平均 勞賃水準을 '70 年度의 70 원에서 부터 '76 年度에 90 원으로 引上시키며 農家現金收入을 '76 年度에 年間 1,800 원으로 提高시켜줄 것을 計劃하고 있다. 그러나 北傀가 國民所得 1.8 倍의 提高計劃을 達成하기 위하여서는 年平均 10.3 %의 成長을 이룩해야 하는데 同計劃이 그대로 遂行되면 '76 年度에 가서 北傀의 1 人當 國民所得은 約 343 弗에 達하게 될것으로 推定된다.

셋째, 社會·文化施策費를, '76 年度에 가서 '70 年對備 1.5 倍로 增額한다고 宣言함으로써 '76 年度、社會·文化施策費는 '70 年度 社會·文化施策費 3 億 9,000 万弗의 1.5 倍에 해당함으로써 約 5 億 9,000 万弗에 達하게 되나 期間中 前記 國民所得增加 1.8 倍에 比해 0.3 倍나 未達된 結果를 조정사침으로서 勞賃引上 1.3 倍와 아울러 低調한 所得引上과 極히 微小한 福祉向上에 不過하다.

이와 같이 北韓이 표방하고 있는 福祉政策에 併行하여 北韓의 年度別所得增加率을 볼것 같으면 우선 北韓은 休戰後 1959年까지 4次에 걸쳐 一律적인 賃金引上을 實施하였으나 지난 '60年代에는 '70年度 9月の 引上措置를 除外하면 過去 10年間に 한번도 全般的인 賃金引上을 斷行한 바 없었다.

即, 休戰以後 '59年度까지 戰後復旧過程에서의 社会的 混亂과 物價 昂騰, 物資欠乏狀態에서 北韓은 名目上 '54年度에 25%, '57年度에 35%, '58年度에 10%, '59年度에 40%씩 一律적인 賃金引上 措置를 取하였으나 同期間の 年平均 實質賃金은 不過 6%上昇에 不過하였다.

다음 '59年度 2月 北韓은 「100:1의 平價切下」인 貨幣改革을 通하여 遊休資金 및 私藏貨幣의 많은 部分을 凍結하여 通貨의 安定을 圖策하는 同時에 社會主義經濟體制의 基盤을 金融面에서 鞏고화하는데 力點을 두고서 強壓的인 價格政策과 併行, 物價安定을 圖謀하는데 努力하였다.

다음 '67年度부터 '69年度까지의 期間의 賃金引上은 '67年 3月 最低級勞賃의 部分的인 引上和 '67年 10月 初級教員에 對한 40%의 引上措置뿐이었으며 '65年度에 全般的으로 30%引上을 計劃하였으나 當時의 勞動生産性이 이에 未洽한 극히 低調한 狀態였기 때문에 財源調達의 困難을 가져와 結局 中斷되고 말았다. 그後 同引上案은 5年後인 지난 '70年 9月1日에야 31.5%의 引上率을 갖고서 施行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表 4 - 4 >

<表 4 - 4>

北 傀 의 賃 金 成 長 推 移

区 分	1956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70
1人当 月平均賃金 (北傀원)	(21)	(46)	(50)	(52)	(51)	(52)	(53)	70
成 長 率 (%)	100	221	234	242	245	244	248	(326)
	-	-	100	103	105	(104)	106	(139)
	-	-	-	100	101	(100)	(102)	(135)
	-	-	-	-	-	100	102	(134)
実質賃金成長	98		203	(210)	211	211	218	(282)
49年 = 100%	-		100	(103)	(104)	(104)	(107)	(139)

資料 : '69年까지 朝鮮中央年鑑 65年版

註 : 괘호내 數值推定, 各年度末現在 規準

이와 같이 지난 '60年度부터 '70년까지 期間에 北傀 国营部
門의 賃金, 俸給勞動者의 總收入은 名目上 年平均 4%씩 引上되
어 '70年末 現在 月 70원 (北傀원)에 達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67年末 現在 階層別賃金實態를 보면 <表 4 - 5>勞
動者의 경우를 8等給으로 区分하여 最低 30원, 最高 109원으로
되어 있으며, 事務職은 勞動者 4級工에 해당하는 月俸으로서
管理職은 55원 ~ 250원 水準으로 각각 推定되어 事務職이 勞動者

의 賃金보다 薄하게 査定되어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이같은 現象은 지난 '60 ~ 70年間的 韓國에 있어서의 鉞, 工業部門의 實質賃金이 年平均 約 28% 成長한데 比하여, 同期間동안 北韓의 勞動者, 事務員의 4% 成長과 견주어 보아 實質賃金의 上昇率은 韓國이 優位에 있음을 볼 수 있다.

例를 들어 1967年度만 보더라도 (北韓의 勞動者, 事務員의 月平均 賃金은 53원에 達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同年의 韓國의 貨幣價值로 換算하면 約 5,618원에 해당함으로써 韓國의 勞動者 및 事務員 賃金의 55%에 해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表 4 - 5> 北傀勞動者 事務員의 賃金

区 分	金 額	区 分	金 額
見習工 (1~2級)	30-40 원	事 務 員	47 원
3 "	39 원	記 員	52 원
4 "	52 원	部 長 級	55 ~ 100 원
5 "	68 원	技 師 長 級	70 ~ 200 원
6 "	84 원	支 配 人 級	80 ~ 250 원
7 " (熟練工)	103 원		
8 " (")	109 원		
		平 均 值	53 원

資料 : 国土統一院, 北傀經濟統計集, 1972.

以上과 같은 現況을 評價하여 보면 北韓은 지난 60年代를 經過하는 과정에서 國防費에 그들 總豫算의 30%를 支出하고 海外貯蓄의 增大를 期할 수 없는 條件下에서 戰時經濟體制의 強化를 標榜하면서 내핍생활과 勞力動員의 強要를 관찰해 왔다.

따라서 北傀가 '71~76年間 勞働者, 事務員의 所得增大를 '70年の 70원線에서 '76年度目標 90원에 達할것을 計畵함으로서 年平均 約 4.3%의 伸張을 내세우고 있으나 期間의 物價上昇率 年平均 2%内外를 감안하면 實質賃金은 年平均 約 2% 上昇에 不過한 것이다.

그러나 北韓住民들의 階層別所得은 韓國에 比하여 相對的으로 낮은 水準에 있으나 劃一화된 體制下에서 어느정도 均衡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왜냐하면 韓國은 '60年代에 工業化를 急速히 추진하는 過程에서 國民所得의 急激한 增加와 함께 農·工間의 不均衡과 階層間所得편재현상이 야기되고 있는데 反하여 北韓은 根本的으로 生産手段의 私有를 禁止하고 있는 劃一화된 體制下에서 勞賃의 等級에 依한 所得隔差밖 에 없음으로 相對的으로 낮은 水準에서 所得配分の 均衡을 유지할 수 있는 體制上的 特徵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現在에도 南·北赤十字會談을 둘러싸고 強調되고 있는 바이지만 앞으로 住民生活水準의 優劣이 南·北韓競爭의 焦點이 될 경우 北傀는 住民生活向上에 재빨리 方向轉換을 모색하여 所得增大 및 社會福祉施設의 擴充과 宣傳에 광분할 것이 豫상된다.

나. 農業部門의 消費實態와 交易條件의 比較

開發途上國家에서의 農·工兩部門간의 交易條件 및 이와 關聯된 諸問題는 經濟發展의 理論的 側面에서 뿐만 아니라 開發政策遂行의 實際的 側面에서도 重要한 問題로 되고 있는데 農工部門간의 交易條件이 兩部門간의 所得 및 資源配分, 貯蓄能力, 生産活動에 影響을 미치는 決定要因의 하나로 作用하고 있기 때문이다.

交易條件에 關한 研究는 國際交易理論의 主要한 分野의 하나로서 오랜 歷史를 갖고 있거니와 國內經濟部門간의 交易條件 特히 開發途上國에서 經濟發展過程에서 나타나는 農·工部門間 交易條件에 對한 새로운 關心은 最近에야 비롯되었다. 그러나 工業化過程의 轉換期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構造的인 特徵으로서 農·工部門에 交易條件의 變化에 關心을 돌리고 이를 經濟發展理論의 展開에서 단편적으로나마 취급하게 된 것은 1950年代 後半에서 었다. (

(Lewis, 1954; Nicholls, 1963; Reinis and Fei, 1961;)

北傀는 休戰後 戰後·復旧過程에서의 工業化의 實現과 國防經濟體制를 達成하기 위하여 農業部門에서 이제껏 많은 工業資金을 屢출해 왔으며 農業生産은 工業의 次位에 등으로서 資本蓄積의 役割을 担当해 왔다. 即, 北傀는 지난 1964年 2月 党4期 8次 全員會議에서 「社會主義工業化를 위하여 農村에서 一定한 資金을 屢출하지 않을 수 없으며 社會主義國家에서 現代的 工業을 創設하기 위한 農民의 資金支出은 全社會의 利益을 위해 必須的인 것」이라

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事實이 바로 北傀가 提示한 重工業優先發展, 輕工業 및 農業의 同時發展이라는 經濟政策의 形成背景이 되고 있으며 農業의 集團化를 短期間에 끝마친 原因이 되고 있다.

集團化以後 北傀는 穀物生産을 비롯하여 工業作物, 蓄産, 果樹生産의 増産을 위한 耕地擴張等으로 土地利用率을 提高시키는 한편 水利化, 機械化, 化學化, 電氣化를 標榜하여 集團化로 組織된 農村勞動을 嚴格한 統制下에 두고서 農産物의 増産을 꾀하여 왔다.

그러나 지난 1961년부터 '69年度까지의 7個年計劃期間에 北韓 農民이 協同農場에서 分配받은 現金收入은 200%의 伸張을 示顯하여 '69年現在 北傀貨도 600원에 達하였으며 '76年度까지의 6個年計劃期間에 農場員의 世帯當 現金收入을 1,800원(北傀貨)로 提高시킬 計劃인데 이같은 增加는 主로 報酬支払 方法의 變化에 依存함으로서 可能해 질것이다.

現在에도 北韓은 協同農場에서의 分配를 可能한 限 現物給与가 아니고 現金支払方式을 採択하고 있으며 分配된 現物中 農家當 自家消費用 糧穀만 除外하고는 全部를 소위(國家收買事業)에 義務的으로 應하도록 되어 있다.

오늘날 北韓에서의 現物所得은 貨幣에 依한 去來를 거치지 않고 直接消費되는 農産物의 歸屬價置를 뜻한다. 이 같은 價置는 農場員이 勞動의 代價로서 分配받은 農産物과 菜田利用에 依해 얻어지는 生産物中 売却되지 않은 部分으로 形成되며 이러한 産物은 通

常 売買経路를 거침이 없이 各農家에서 消費되기 때문에 公式的
商品流通額에는 包含되지 않는다.

또한 協同農場間에 있어서도 所得의 隔差는 顯著하다. 即, 山間
地帶보다 平野地帶의 農場 또는 工業用作物로 되는 高價作物을 生
産하는 農場이 보다 많은 收入을 올리고 있으며 때문에 農場員間
에도 顯著한 所得의 隔差를 볼 수 있는데 '65年現在 農戶當 地
域別平均分配量의 差異를 볼 것 같으면 現物收入에서는 平野地帶農場
員 105%, 中間地帶農場員 99%, 山間地帶 92%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現金收入에 있어서는 逆順으로서 平野地帶農場員 68%,
中間地帶農場員 91%, 山間地帶農場員 116%로 나타나 있다. 그
러나 總收入에서 現物收入이 차지하는 比重이 近 80%를 차지 한
으로서 平野地帶農場員이 山間地帶農場員보다 豊裕한 生活을 하는 것
은 勿論이다.

北傀公式統計에 나타난 北傀의 農家戶當 現金 및 現物收入推移를
볼 것 같으면 <表 4-6> 지난 '60年代에 알곡 1.8倍, 現金이
2倍씩 各各 增加收入되어 '69年度의 年間 收入은 알곡 3,780屯
現金이 600원에 達하였음을 볼 수 있다.

反面에 韓國은 지난 1967年만 하더라도 農家所得은 都市勤勞者
家計所得의 60.1%에 不過하였으나 1972년에는 83.0%로 크게
好轉되었다. 이같은 現象은 家計支出面에 있어서도 農家の 都市勤
勞者에 對한 比率이 1967年の 63.7%에서 1972년에는 81.9%
로 增加하였지만 農家の 이러한 支出增加速度는 所得增加速度보다

<表 4 - 6 >

北韓의 農戶當 現物 및 現金收入

区 分		1954	1960	1961	1963	1969
實 數	알 곡 (kg)	764	2,100	2,700	2,848	(3,780)
	감 자類 (c)		540	700	-	-
	現 金 (원)	55	300	400	489	(600)
成 長 率	알 곡 (%)		168	(216)	-	(300)
	감 자類 (%)		270	(362)	-	-
	現 金 (%)	100	53%	(714)	12倍	(17倍)

資料 : 朝鮮中央通信社 . 朝鮮中央年鑑

더욱 낮아 相對的으로 農家의 貯蓄性向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表 4 - 7 >

이와같이 鄕市와 農村의 生活水準의 均衡的 向上은 農家販賣價格指數와 購買價格指數의 變化推移에 依해서도 알 수 있는데 即, 페리티指數 (1970 = 100)가 1967年度에는 96.5로서 農家의 交易條件이 不利하였으나 그동안 農家販賣價格指數의 上昇이 훨씬 빨라서 1971년부터는 購入價格指數를 上廻하기 始作하였으며 1973年の 페리티指數는 114.7로 向上되었다.

<表 4 - 7> 都市勤勞者와 農家의 所得支出

(單位: 圓)

年 度	都市勤勞者所得		農 家 所 得		B/A (%)	B/A (%)
	所得(A)	支出(A)	所得(B)	支出(B)		
1967	20,702	16,560	12,456	10,546	60.1	63.7
1969	27,800	22,110	18,157	14,159	65.3	64.0
1970	31,770	24,700	21,313	17,172	67.1	69.5
1972	43,120	31,330	35,785	25,567	83.0	81.9

資料: 經濟企劃院, 農水産部, 1975.

<表 4 - 8> 「페리티」指數의 推移

(1970=100)

年 度	農家購入價格 指數 (A)	農家販売價格 指數 (B)	페리티 指數 (B/A)
1967	65.8	63.5	96.5
1968	78.8	74.3	94.3
1969	86.8	84.8	97.7
1970	100.0	100.0	100.0
1971	111.4	121.4	106.1
1972	130.5	147.9	113.3
1973	143.1	164.2	114.7

資料: 韓國銀行, 統計月報, 1974

이와 같은 事實은 經濟全般의 近代化趨勢에 따른 農業部門의 貨幣經濟化의 進展過程에서 前述한 바와 같은 穀價支持政策 農業生産性의 向上等に 依하여 農家の 商品交易條件이 有利하게 전환되고 있음을 意味하는 것이다. <表 4 - 8 >

以上과 같은 生活水準은 1970年代에 있어서도 重化学工業化를 主軸으로 한 經濟開發이 더욱 高度로 추진됨으로써 계속 向上되어 1981년에 있어서 1人當 GNP는 197.7 천원 (983 弗)에 達하게 될 것이 豫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貯蓄能力의 向上으로 '81年度의 總投資는 国内貯蓄으로 主로 充당될 것이 豫상된다.

아울러 消費生活의 合理化와 消費支出 「패턴」의 改善이 더욱 進展되어 1981年度의 1日 1人當 「칼로리」섭취량은 1972年度의 2,376 cal에서 2,555 cal로 增加할 것이 豫상되며, 1981年度의 1人當 年間纖維消費量은 1972年度에 比하여 1.6 倍가 늘어난 8.5 kg에 그리고 1人當 年間 「에너지」消費量은 2.3 倍가 增加한 3,072 kg에 達하게 될 것으로 본다.

다. 生必品價格의 南·北韓比較

1970年度의 韓國의 製造業全部門의 平均賃金水準은 17,490 원이었고 北韓이 約 55~70 원(北韓貨) 이었다. 이같은 數値는 對弗貨交換比率를 基準으로 하여 比較한다면 韓國의 貨幣單位로 約 9,000~11,200 원에 該當한다.

그러나 北韓에 있어서는 主食과 副食이 配給制度이며 其他의 生必品은 극심한 不足狀態에 있기 때문에 住民들의 내핍생활을 強要할은 勿論 價格面에 있어서도 南·北韓의 差異는 극심하다.

'우선 '70年度를 基準으로 하여 北韓을 본다면 담배 1갑이 1 원이며, 소고기 1kg이 7.50 원으로서 勞動者의 1個月 俸給으로서 는 소고기 6~7kg의 購入에 不過하다. (表 4-9)

(表 4-9) 主要生必品の 價格比較(70年度)

韓國	北 韓
製造業平均賃金 17,490 원	勞動者 平均賃金 55-70 원 (한국 원화 9,000-11,200 원)
담 배 (1갑) 100 원	담 배 (1갑) 1 원
소 고 기 (1kg) 1,000 "	소 고 기 (1kg) 7.50 "
속 내 의 (1벌) 1,500 "	속 내 의 (1벌) 15 "
신 사 복 (1벌) 18,000 "	신 사 복 (1벌) 200 "
래 디 오 (1台) 4,000 "	래 디 오 (1台) 250 "
손 목 시 계 (1個) 6,000 "	손 목 시 계 (1個) 120 "
구 두 (1足) 2,000 "	구 두 (1足) 18-25 "

또한 紳士服 한벌에 200 원으로서 3~4 個月分의 俸給이 必要하며 레디오 한대에 250 원으로 나타나 있다.

이같은 現象은 結局 國民所得이 라든가 賃金水準의 比較만 가지고서는 南·北韓의 生活水準의 比較가 不可能하며 主要生必品の 價格現況과 比較의 檢討가 必要한 것인데 賃金水準과 生必品과의 關係를 南·北韓 比較한다면 約 3 : 1의 比率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事實이 바로 '74 年度에와서 北傀가 一部 工產品의 價格을 引下하게된 要因을 形成하고 있는 것이다.

即, 價格機能을 通하여 需給이 調節되는 自由主義經濟體制下에서는 需要가 一定할때 供給이 增加하면 당연히 價格은 引下되고 따라서 消費者의 利益이 增加한다. 그러나 北韓經濟와 같이 價格機能代身 指令과 命令이 需給을 調節하는 計劃體制下에서는 價格의 變動이란 단지 統計數字의 變更를 意味하며 消費財供給의 增大나 生産性의 向上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價格의 引下가 消費를 조장하여 住民들의 生活水準을 높이고자 하는것도 아니며 다만 北傀가 一部 工產品의 價格을 引下한 것은 이제껏 지나친 消費抑制과 稅金의 過重으로 住民들의 勞動意慾이 크게 減퇴한 것을 回復하는데 目的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보다 重要한 目的은 이제껏 지나치게 높은 去來稅나 適當한 計劃利潤의 策定으로 말미암아 消費財價格이 엄청나게 높아서 農民이나 勞動者의 所得水準을 가지고서는 計劃된 消費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在庫가 累積이 되고 그에 따라 去來稅收入이 確保되지 않아

財源調達에 차질이 생겨 이른바 그들 計劃經濟의 운영이 마비되는 現象을 타개 하자는 데에 目的이 있는 것이다.

더욱이 價格이 下向調整되었다고 하는 一部工產品의 內容을 볼것 같으면 主로 織物이나 編織物, 신발, 其他 日用品 等이며 家内工業 水準에서 供給되고 있는 物件들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消費財가 지금까지 過重한 去來稅의 賦課로 因하여 在庫가 累積되어 供給되 지 못하였다는 것은 北韓住民의 生活水準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가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第 5 章 問題点 및 展望

이제껏 本研究報告를 通하여 南·北韓의 國民所得의 總量的인 增加比率과 併行하여 1人當 國民所得의 增加比率과 이같은 國民所得의 增大分이 階層間 어떻게 分配되는가 하는 양상에 對해서 檢討해 왔다.

그러나 嚴格한 意味에서의 國民厚生問題는 GNP의 增加와 階層間 所得分配 양산만으로는 精確히 파악할 수 없는 것이 現在의 南·北韓의 特徵인마 資本主義經濟體制下에 있는 韓國에 있어서는 '60年代에 이룩한 産業構造의 近代化와 함께 農, 工間의 所得격차, 또한 相對적으로 北韓보다 높은 所得水準을 유지하고 있으나 아직도 階層間 所得分配의 不均衡이 問題点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社會主義 統制經濟體制下에 있는 北韓에서는 階層間 所得分配의 不均衡問題보다는 社會主義經濟收入과 지나친 間接稅의 過多策定으로 因한 住民들의 내핍생활이 南·北韓에 커다란 生活水準의 격차를 招來하고 있는 것이 南·北韓對決過程에서의 커다란 問題点으로 登場하고 있는 것이다.

이點 韓國은 尙차 第4次經濟開發 5個年計劃에서 所得分配의 平準化와 農·工間의 交易條件의 改善으로 資本家와 勞動者, 都市와 農村間의 所得分配의 均衡을 最大의 政策課題로 내세우고 있는데 韓國의 都市家計消費支出 構成比中 「엔겔」係數는 이미 지난 '67年度에 44.5%로 부터 '70년에 40.4%로 漸次 낮아지고 있는

바 그中 穀物對比의 低下가 顯著한 點은 所得向上에 따라 消費性向이 높아짐으로서 食糧에 對한 彈力性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飲食物費의 低下와 反比例하여 醫藥品代와 美容衛生費, 教育費, 交通通信費等이 增大한으로서 雜費比重은 '67年度의 21%로부터 '70年度에 25.5%로 提高되고 있으며 그中에서도 美容衛生用費가 '67年度의 1.2%線에서 부터 '70年度에 3.8%로 急激히 上昇한 點은 注目할만한 事實로서 이에는 化粧品 價格의 引上 措置도 커다란 要因이 되겠으나 보다 主要한 事實은 消費性向이 顯著히 높아졌다는 點을 들 수 있다.

'反面 北韓에 있어서 個人의 消費支出 動向의 分析은 公共消費動向의 分析에 依해 補足되는데 公共消費에는 政府機關이 住民에 對하여 直接 料金を 徵收치 않고 供給하고 있는 保健, 教育, 其他의 社會「서비스」 價值가 包含되고 있다.

따라서 完全消費의 合計로 본 境遇 個人의 消費支出은 全體의 約90%, 公共消費는 約10%, 점유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後者의 경우 金額으로 表示하기는 거의 不可能하다. 다만 家計費構成에서 公共消費에 해당하는 項目이 韓國에 比하여 相對的으로 낮은 比重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同部門의 혜택도 無視할 수 없는 수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食糧消費는 지난 10年間 量的으로 何等 變함이 없었으며 다만 勞動의 輕重에 따라 規定된 糧穀配給基準表에 의거하여 1日平均 約 700g를 消費하고 있다. 이中 重勞動者 및 有害勞動者가 最

高率의 800 ~ 1,000 g을 支給받고 있으며, 高級官吏, 党的 幹部가 白米로 800 ~ 1,000 g, 軍人 역시 白米로 800 g을 配給받는 등 上級의 待遇를 받고 있다.

最近에 와서 家畜의 增殖에 따라 肉類가 다소 供給됨으로서 攝取「카로리」率은 若干 提高되고 있으나 아직도 고기나 酪農製品等 比較的 高價의 食物을 攝取하기에는 所得이 높지 못하고 '74年度 現在 1日, 2,000 Cal 以上을 超過하지 못하는 것으로 分析되고 있다.

이같은 食生活面에서의 내핍은 '70年代 後半期까지도 解決되지 못할 것이 豫想된다.

다음 非食料品 部門의 消費水準으로서 지난 10年間 被服事情이 若干 好轉되었을 따름이고 耐久消費材에 있어서는 「레디오」 재봉틀, 其他 약간의 傢具保存에 不過하고, 아직도 T.V.나 電話機保有는 中央級 黨幹部들에 국한하고 있다.

北僑가 6個年計劃에 反映시킨 非食料品の 生産目標는 洗濯機 年産 113台, T.V受像機 103台, 化學섬유 61萬7千屯, 織物 5~6億m, 신발 7,000萬足, 其中 皮靴 1,000萬足으로 되어 있으며 其外 內衣 1.4倍, 웨타 및 자켓 2.1倍, 양말 1.8倍, 「알미늄」 製品 2.8倍, 유리製品 5.2倍로 發表되고 있어서 實際量의 파악이 거의 不可能한 實情이다.

같은으로 오늘날 北韓의 勞動者, 事務員들의 生計費構成을 볼것 같으면, 飲食物費의 比重 即 「엔겔」係數는 '56年~'63年間에

57.8%로 부터 45.5%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 家具類의 購入費 라든가 文化衛生費는 '56年度の 2.5%, '61年 1.7%로 부터 '63年度에는 4.3%, 17.2% 등으로 各各 增加하는 現象을 보여 주고 있어서 勞動者와 事務員들의 文化生活이 向上되었음을 北傀의 公式発表는 誇張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前章에서 檢討한 바 있거니와 北韓에서는 農産物價格은 嚴格한 統制에 依한 廉價의 配給價格으로 規定되고 있는 반면에 工産品價格은 住民들의 수탈을 위하여 高價의 固定價格으로 策定되어 있기 때문에 生計費構成에서 飲食費는 낮은 比率로 그리고 被服費와 家具類의 購入等은 高價로 策定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68年度에 調査한 5人家族에 對한 家計収支를 볼 것 같으면 飲食物費는 22원에 達하여 總支出 73원의 不過 31%에 해당하고 있다. 따라서 北韓가 公表한 「엔겔」 係數는 精確성을 기하고 있지 못할뿐 아니라 다만 「엔겔」係數가 낮아지는 趨勢만을 認定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北韓에서의 實質的인 住民生活의 急激한 向上은 北韓가 限定된 資源을 軍費補充과 海外資本의 광범위한 導入을 期할수 없는 條件下에서 戰時經濟體制를 계속 強化하고 있는 限 實質的인 住民生活의 急激한 向上은 가까운 時日안에는 不可能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韓國에 있어서는 '60年代에 야기된 農·工間에 所得격차를 現在 推進中인 「새마을 運動」을 中心으로 하여 農業分野의 集中的인 投資로서 農業部門에서 야기되는 生産性的인 向上은 교무적인 事實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農業部門의 生産性의 向上과 所得의 增大는 全体 國民經濟의 持統的인 發展을 約束하는 것이며 所得分配의 均等化는 國民經濟生活과 厚生面에 있어 南·北間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豫側되고 있다.

THE STATE OF TEXAS,
COUNTY OF DALLAS,
SS: I, the undersigned, a Notary Public in and for the State of Texas, do hereby certify that the within and foregoing is a true and correct copy of the original of the same as the same appears from the records of the said County of Dallas.